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50호(號) 1929년(昭和 4) 7월 3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35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7월 3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내지발착(內地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포(綿布: 옷 한 벌 감의 직물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(交織)했거나 도포(塗布)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후쿠야마(福山)」의 앞에 「오카야마(岡山)」를, 「야나이(柳井)」 다음에 「나카쓰(中津)」를,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미나토가와발(湊川發) 0.62」의 다음에 「오카야마발(岡山發) 0.70」을, 「구루메발(久留米發) 0.50」의 다음에 「나카쓰발(中津發) 0.47」을 추가(追加)함.